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46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1일 권수정 의원 외 14명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권수정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의 시설과 설비를 이용, 정보 접근에 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은 없음.

-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 및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편의시설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편의보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음.
- 제정안은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의규정(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장의 의무(안 제3조)로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시설주의 의무(안 제4조)로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안 제5조), 편의시설의 실태점검(안 제6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7조), 교육실시(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제2조(정의)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3조(시장의 의무)	제8조(교육 실시)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제10조(시행규칙)
	부 칙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총칙규정(안 제1조~안 제4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의무(안 제3조), 시설주의 의무(안 제4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 (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편의시설의 실태점검(안 제5조~안 제6조)

- 법 제10조제2항에서 시설주관기관¹⁾으로 하여금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다.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및 교육 실시(안 제7조~안 제8조)

- 조례안 제7조에서는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정 비의무 시설을 이용하면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의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1)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 다만, 비용지원 대상자를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는 법정 비의무 시설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장애인이 실제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는 다중 이용 시설 등 구체적인 비용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그 외 규정(안 제9조~안 제10조)

- 조례안 제9조는 장애인등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상호간 및 장애인등의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마. 이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설주²⁾의 의무 및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주에만 해당되므로, 본 조례안 제7조를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하는 편의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될 수 있음.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 집행부의견

-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간 상충 등 별도 쟁점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전술한 검토결과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시행규칙의 입법을 통해 지원의 범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종합의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의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면적기준 이하의 시설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시민에게 수익적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7조에서 비용지원 대상자를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조례안의 처리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 내용

-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수정)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646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6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수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6조 (생략)	제1조 ~ 제6조 (제정안과 같음)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 장은 <u>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u>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 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u>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 의 이용편의를 위해</u> ----- ----- ----- -----.
제8조 ~ 제10조 (생략)	제8조 ~ 제10조 (제정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보다 완화된 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점검대상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점검 후에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청장에게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상호간 및 장애인등의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646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6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수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6조 (생략)	제1조 ~ 제6조 (제정안과 같음)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 장은 <u>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u>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 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 <u>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 의 이용편의를 위해</u> ----- ----- ----- -----.
제8조 ~ 제10조 (생략)	제8조 ~ 제10조 (제정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보다 완화된 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점검대상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점검 후에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청장에게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상호간 및 장애인등의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